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시행('17.4.25)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, 임영휴가 신설 및 경조사 일수를 일부 개정,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(안 제8조제4항)
-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자녀부터까지 산입 확대(안 제19조제1항)

- 상위 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아니한 연가일수 공제 휴직범위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로 한정함(안 제21조제2항)
-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승인함
(안 제24조제1항)
-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및 만 4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한 육아시간 및 부모휴가를 성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함(안 제24조제4항, 안 제24조제13항)
-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들을 예우하여 입영휴가를 부여함
(안 제24조제15항)
-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함(안 제32조)
-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
(안 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, 입영휴가 신설 및 경조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였으며,
 - 안 제19조 1항에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 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, 둘째자녀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,
 - 안 제21조제2항에서 상위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아니한 연가일수 공제 휴직범위는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24조제1항에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,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해서는, 소속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4조제4항, 제24조제13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및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한 육아 시간 및 부모휴가를 남·여 성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,
- 안 제24조제15항에 군 입영자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당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32조에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였으며,
- 끝으로, 별표3에서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를 현행화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의 제한(안 제8조)
- 나.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(안 제19조)
- 다. 연가일수 공제 휴직범위를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로 한정(안 제21조)
- 라.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소속기관 장의 의무적 승인 명시(안 제24조)
- 마. 육아시간(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) 및 부모 휴가(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)를 성별에 관계없이 지급(안 제24조)
- 바. 군 입대가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에 휴가 부여(안 제24조)
- 사.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3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
- 2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7.6.22. ~ 7.12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별표 2**”를 “**별표 2**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 후단 중 “**공무원에게**”를 “**공관장에게**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**본직기관**”을 “**원 소속기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해당하게 될 때**”를 “**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**”로, “**본직기관**”을 “**원 소속기관**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**「공무원증 규칙**”을 “**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**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호 중 “**셋째**”를 “**둘째**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연가원의 제출**”을 “**연가신청**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.

$\frac{\text{해당연도 휴직기간(개월)}}{12(\text{개월})} \times \text{해당연도 연가일수}$
--

제21조제3항 중 “**지참, 조퇴**”를 “**지각, 조퇴**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**지참, 조퇴**”를 “**지각, 조퇴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**구청장**”을 “**소속기관의 장**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**징병검사**”를 “**병역판정검사**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4항 본문 중 “**여성공무원**”을 “**공무원**”으로, “**임신공무원**”을 “**임신 중인 공무원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 중 “**여성공무원**”을 “**공무원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⑮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,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적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적용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5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은 “<u>별표 2</u>”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9조(파견근무) ①、② (생략)</p> <p>③ 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공무원에게</u>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</p>	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파견근무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관장에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겸임근무) ① ----- -----</p>

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
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복장 및 제복) ①、② (생략)

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증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 등)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、정직기간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、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

----- 원 소속기관-----
----- . -----

----- .

② -----
-----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-----
----- 원 소속기관-----
----- .

제12조(복장 및 제복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-----
----- 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 등) -----

----- . -----

----- .

1. -----

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 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

2. 3. (생략)

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생략)

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제2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③ (생략)

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⑤ ⑥ (생략)

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(생략)

②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

----- 둘째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연가신청 -----

-----.

⑤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

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3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- 1. 「병역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, 소집,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
2. ~ 10. (생략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 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②、③ (생략)

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공가) -----

-.

- 1. -----
병역판정검사-----

2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공무원

----- 임신 중인 공무원-----

-----.

⑤ ~ ⑫ (생략)

⑬ 만 4세 이하(매년 1월 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⑭ (생략)

〈신설〉

〈신설〉

제32조 (생략)

[별표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5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 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⑬ -----
----- 공무원-----

-----.

⑭ (현행과 같음)

⑮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32조(적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적용한다.

제33조 (현행 제32조와 같음)

[별표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5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.

-----.

-----.